

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제3항과 제4항에 관련된 사항

1. 대주주명		(주) 동부하이텍
2. 신용공여내용	신용공여일	- (최초공여일 2004년 6월 10일)
	신용공여종류	신용대출금
	신용공여금액(원)	- (최초공여액 65,000,000,000)
	신용공여총잔액(원)	38,151,000,000
	만기일	2019년 6월 10일
신용공여금리(%)	- 2013. 6월 이전 : 기본금리(A0 3yr)* - 2013. 6월 이후 : 기본금리+ 9.535% - 2015. 3월 10일 이후 : 기본금리+ 2.75% * 기본금리 : 민간채권평가 3사(나이스채권평가, 한국자산평가, KIS채권평가)의 평균 채권금리로, 한국기업평가원의 기업 신용등급 (동부하이텍 A0)별 금리	
3. 자금용도		Syndicated Loan참여를 통한 자금운용수익률 제고(본건은 기존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의 변경공시임)
4. 이사회결의일		2015년 3월 20일
5. 기타		- 본 건은 주요내용의 변경공시로서, 2004년 4월 9일에 기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동부하이텍이 신디케이티드론 주간사인 산업은행을 통해 주요사항 변경을 요청함 에 따라, 당사는 대주단의 일원(약6.18%, 이자변경일 기준)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의함 [결의결과] - 아래 의안에 대하여 동의 처리함 [부의내용] <input type="checkbox"/>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티드론 운영 등 주요사

항 변경의 건

① 동부하이텍 신디론 이자율 재결정

- 추진사유 : 동사의 매각여건 조성등을 위한 신디론 이자율 인하
- 이자율 변경 사항 : 기본금리+9.535% → 기본금리 + 2.75%

② 동부메탈 지분 처분기한 변경

- 추진사유 : 동부메탈 워크아웃에 따른 주식매각 지연
- 주요변경내용 : 동부메탈의 지분 처분기한 삭제, 매각 시 매각금 전액 신디론 상환 조항 신설 (약정 변경 후 동부메탈 지분 처분 또는 중요한 변동이 있을 시 대주단 사전동의를 득해야 함)

③ 동부하이텍 재무약정 변경

- 추진사유 : 2013년 이후 재무약정의 부재로 2016년 이후 중단기 재무약정 신설
- 주요내용

이행시기	부채비율	EBITDA/이자비용	비고
2016년	500%	2.0	이자비용 감소 반영
2018년	400%	3.0	영업실적 개선 감안